|  |  |  |  |
| --- | --- | --- | --- |
| |  | | --- | | **2025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구협회 사상리그** | | **- 대회규정 -** | | **제 1조 (리그명칭)**   1. 부산광역시 야구협회 사상구 야구협회 사상리그라 한다   **제 2조 (대회명칭)**   1. 2025년 사상구 야구협회장기 야구대회라 한다.   **제 3조 (운영진)**   1.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경기이사로 구성한다. (회장은 본 리그의 운영 및 상벌을 관장한다.)   **제 4조 (상벌위원회)**   1. 상벌위원: 부회장, 사무국장, 경기이사로 구성한다. 2. 상벌위원회 의장은 부회장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3. 회장은 상벌위원회 결정사항의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5조 (리그구성)**   1. 본 리그구성은 1부, 2부, 3부리그로 구성하고 (2025년 정규리그 경기로 한다) 2. 2025년 리그는 2부,3부 통합운영한다(세부내용은 별도공지한다)   **제 6조 (참가팀)**   1. 참가팀은 지정된 날짜(10월 1일 ~ 15일)에 리그종료와 관계없이 지정된 금액(리그참여 선행금)을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단, 기 납부된 선행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참가비 납부를 기준으로 가입의사를 확인한다. 3. 매년 참가팀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전년도 참가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 7조 (선수등록)**   1. 선수 자격은 선수 출신과 비 선수 출신 모두 20세(200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또는 당해 년도 고교 졸업자) 이상이 되어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2. 시즌 초 일괄 선수등록(사무국에서 지정한 날짜: 2025년 시즌은 별도) 이후의 선수등록은 신규등록으로 인정된다. (14일 이후 출전가능) 3. 각팀은 선수등록 후 경기에 임해야 한다. (선수 등록없이 출전한 선수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4. 선수등록은 각 팀에서 등록한다. 5. 선수등록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6. 선수등록 시 게임원에 사진을 등록하여야 한다.(사진이 없이 게임 출전 시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제 8조 (선수 출신에 대한규정)**   1. 선수출신의 기준은 대한야구 협회에 등록된 고교 이상의 선수로 한다. (고교 1학년때 선수로 등록시 선수출신 선수로 인정한다.) 2. 40세(198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비 선수출신 선수로 구분 한다 (1부, 2부리그). 3. 40세(198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비 선수출신 선수로 구분 한다 (3부). 4.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출신 선수는 각 팀당 2명으로 제한한다.(1부, 2부) 5.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출신 선수는 각 팀당 1명으로 제한한다.(3부) 6. 선수 출신이 투수할 경우 선발 2이닝 투구만 할 수 있다. (1부, 2부) 7. 선수 출신 선수는 투수 및 포수로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3부) 8. 타석에 임하는 선수출신 선수는 나무 배트만 사용하여야 한다 (단 투수가 선수출신일경우는 일루미늄 배트 사용가능   **제 9조 (경기규칙)**   1. 게임원사이트의 사상리그 경기일정을 기본으로 한다. 2. 사무국은 게임원사이트에 경기일정을 공지한다. 3. 각 팀의 책임자는(감독 및 회장) 경기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4. 모든 경기는 7회 경기로 하며 4회를 정식게임으로 한다. 5. 경기 개시시각 10분 후까지 경기에 필요한 선수가 구성되지 안으면 몰수 경기로 한다. (단, 몰수 경기는 상벌위원회에서 정한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은 상대팀에 귀속한다)    1. 양팀 감독 간의 합의가 있으면 10분 더 기다릴 수 있다. (단, 경기종료시간은 변경될 수 없다.) 6.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동일 유니폼 및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단 감독 상의 하에 출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 심판은 2심제로 한다.    1. 결승전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에 따라 2심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8. 경기 중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감독 부재 시 코치나 주장이 할 수 있다)    1. 어필이 5분 이상 지속될 시 심판의 판단 하에 몰수 경기로 할 수 있다.    2. 심판은 게임에 상당한 지장을 일으킨 선수나 감독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고 상벌위원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상벌위원회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3. 퇴장된 선수 및 소속팀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팀 퇴출을 결정할 수 있다. (퇴장선수는 1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및 포스트시즌 출장정지, 소속팀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9. 사용구는 공인구로 하며 한 경기 당 3개로 양팀에서 6개를 준비한다. 경기중의 부족분은 양팀에서 동수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합구는 시즌 전 일괄 지급한다)    1. 포스트 시즌 시합구는 사무국에서 지급한다.    2. 2025시즌: 팀당 시합 구(42개) 지급 10.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의 선수는 정규시즌 50%의 경기에 출전한 선수에 한해 포스트시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2025시즌: 7경기) 11. 지명타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투수에 한해 적용이 가능 하다. 12. 승리투수의 요건은 3회를 마무리한 선수로 한다. 13. 우천 시 심판이 사무국장에게 연락 후 경기국에서 경기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14. 리그순위는 승점으로 계산한다. (승: 3점 무: 1점 패: 0점) 15. 승점이 동점일 경우 상대전적, 최소실점, 다 득점 순으로 한다.(팀 전체게임) 16. 몰수 패는10-0으로 처리하고 몰수 승 한 팀은 전원1경기를 기록으로 인정한다.(승리투수1명을 지정할수있다) 17. 리그도중 팀의 해체로 인한 잔여 경기는 몰수게임 룰을 적용한다.(몰수비는첫번째 상대팀에게만 지급된다) 18. 콜드게임은 5회 10점 6회 8점으로 한다. 19. 상기 경기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 협회 공인경기 규칙에 따른다.   **제 10조 보상규정(부상 및 보상)**   1. 경기중 부상은 사무국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사무국에서는 개인 상해 보험가입을 권장한다) 2. 경기중 기물 파손은 팀에서 해결을 하여야하고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3. 그 외 인적 물적피해의 구분이 모호할 때는 양팀감독자 및 사무국회의에서 결정하고 상호 협조한다 4. 개인 보호장비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1. 헬멧 및 암가드는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 시 타석에 임할 수 없다.    2. 풋 가드의 착용은 선택사항이나 미 착용으로 인한 부상 발생 시 사무국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3. 포수 헬멧은 의무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 시 경기에 임할 수 없다.   당 리그에서는 5드롭(배트길이(인치) - 배트의 무게(온스)) 이하의 배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 배트의 재질은 규제하지 않는다.(단 홍단무XL-1,단무지,CF,고스트는 사용불가)  **제 11조 (경기시간)**   1. 경기시간 및 일정은 홈페이지 경기일정을 원칙으로 한다. 2. 경기에 있어서 모든 시간의 기준은 해당경기 심판의 시계로 판단한다(휴대폰 시간을 권장한다). 3. 경기시간은 2시간10분으로 하고 2시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경기시간은 필요에 따라 경기국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플레이오프(준결승)는 정규리그 룰을 따른다. 5. 결승은 콜드 및 경기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12조 (리그 승격 및 강등)**   1. 정규시즌 2부리그, 3부리그 우승/준우승팀은 자동으로 다음시즌 상위 리그로 승격된다. (승격 거부 시 상금반환과 함께 퇴출한다.) 2. 정규시즌 1부리그, 2부리그 하위 2팀은 자동으로 다음시즌 하위 리그로 강등된다. (강등 거부 시 퇴출한다.) 3. 정규시즌이라 함은 포스트시즌 종료 후의 최종성적을 말한다.   **제 13조 (상벌규정)**   1. 몰수 패 1회 20만원이상의 벌금과 함께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없다.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고 퇴출을 명할 수 있다)(몰수기금은 사무국에서 관리 및 지급을 하고 리그불참 시 즉시 환불한다.)    1. 부정선수에 의한 몰수경기는 상벌위원회 회부 후 벌금 및 징계결정.    2. 몰수경기의 벌금은 상대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3. 부정선수는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인되면 부정선수로 인정한다. 2. 유니폼 미 착용 시 (모자, 상하의 기준) 1인 당 2만원으로 한다. 3. 구청장배, 국회의원기 대회는 각 팀당 9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1. 구청장기 및 국회의원기 미 참석팀은 상벌위원회 회부를 원칙으로 한다. (상벌위원회에서는 퇴출을 원칙으로 한다) 4. 벌금은 부과 후 다음 경기 전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 시 그 다음 1경기를 몰수패로 하며 완납이 될 때까지 이 규정은 누적 적용된다. 5. 시상은 우승, 준우승, 공동3위 트로피 및 야구용품 상품권을 지급한다. (우승팀은 별도의 우승메달 수여 팀당 20개이내)    1. 개인시상은 소정의 트로피 또는 야구용품을 지급한다. 6. 비 선수출신 개인시상은 타격, 타점, 홈런, 최다안타, 다승, 방어율, 탈삼진, 최다이닝에 대해 시상한다. (규정타석은 경기당 2.0타석(28타석)으로 하고 규정 이닝은 경기당 1.5이닝( 21이닝)으로 한다) 7. 선수출신 시상은 MVP 1명을 시상한다. 8. 각 팀 및 회원이 본 리그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경우 상벌위원회에서 퇴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14조 (포스트시즌)**   1. 포스트 시즌 진출 팀은1, 2, 3부리그 시즌성적 상위 4개 팀으로 한다. 2. 포스트 시즌 경기 진행방식은 1위팀 과 4위팀 및 2위팀 과 3위팀 의 경기 승리팀이 결승전에 진출한다 3. 포스트 시즌 결승전은 제9조 7.1항 제9조 9항 제9조10항 및 제11조 4항 제11조 5항 룰을 적용한다 4. 플레이오프 경기 무승부 시 정규리그 상위팀의 승리로 한다. 5. 결승경기 무승부 시 연장을 진행한다(심판이 일몰로 인하여 경기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비뽑기 등으로 승부를 가늠한다). 6. 포스트시즌에도 기록을 실시한다. 7. 2025시즌은 포스트 시즌 방식을 변경한다   **제 15조 (부속규정)**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구협회 사상리그 사무국은 사상구청장배 및 사상구 국회의원기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2. 사상구청장기 및 사상구 국회의원기를 진행함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구협회 사상리그가 존재한다.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구협회 사상리그 사무국은 매년 사상구청장배 및 사상구 국회의원기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정규시즌 일정에 포함될 수 있다.   **제 16조 (**운동장 환경 및 기록규정)   1. 게임 중 발생된 쓰레기는 모두 운동장 밖으로 가져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동장에 비치된 쓰레기봉투를 적극 활용한다. 경기 후 기록원에게 정리 상태를 확인 받은 후 퇴장한다 2. 경기종료 후 양팀 대표자(감독)는 기록지 확인 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 (서명이 없을 경우 서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양팀 감독(대표자) 서명이후의 기록지 수정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록원에게는 선수교체 및 스코어 확인이외에는 접근을 불허한다. (감독 및 감독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만 기록원에게 접근 할 수 있다 ) 5. 기록은 기록원의 고유권한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 확인은 게임원 홈페이지 기록게시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만약 경기장내에서의 이의제기는 상벌위원회 회부를 원칙으로 하고 징계를 가한다. (벌금 및 출장정지 등) 6. 기록원은 정확한 기록에 최선을 다하고 중립성을 가져야한다. | |